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9
------------	------

발의연월일 : 2020. 9. 22.

발의자 : 오영환 · 박홍근 · 김민철

양향자 · 김영배 · 박성준

양정숙 · 장경태 · 김남국

조승래 · 김승원 · 최혜영

한정애 · 이재정 · 이용빈

김민석 · 윤후덕 · 허영

이수진 · 임오경 · 임호선

황운하 · 김진애 · 권칠승

도종환 · 김원이 · 박재호

유정주 · 박정 · 김주영

이용우 · 김정호 · 천준호

이해식 의원(34인)

제안이유

119긴급 신고는 그 접수 등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집중호우 등으로 119 신고 폭주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오늘날 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춘 긴급신고 접수 등 절차에 관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119긴급신고의 실효성 확보의 전제인 개인위치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화재, 재난,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8조).

- 다.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해양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
- 마.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의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표준화함(안 제17~18조).
- 사. 소방청장 등이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의 공유 또는 이관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공유 및 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이 119긴급신고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2조).
- 아.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에 의한 신고를 말한다.
3. “119정보통신시스템”이란 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신고접수 및 처리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정보지원시스템, 모바일(핸드폰, 인터넷 등) 신고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체계를 말한다.
4. “119접수센터”란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119긴급신고

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5. “119비상접수센터”란 통신상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119접수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119긴급신고 접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19접수센터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119접수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119긴급신고를 중단없이 접수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비상용 119접수센터를 말한다.

6. “비상통신망”이란 중계국, 기지국 등 통신 기반시설의 장애 등으로 상시 사용하는 통신수단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이동이 가능한 유·무선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7.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119접수센터 및 119비상접수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민은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
다.

③ 국민은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를 이용해서
는 아니 된다.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정보공유
및 119긴급신고 관련기관 사이에 긴급신고 이관에 관한 업무를 총
괄·조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 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긴급신고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119긴급신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119긴급신고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긴급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 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119긴급신고 정책심의위원회) ① 119긴급신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긴급신고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119긴급신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19긴급신고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19긴급신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119긴급신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19긴급신고의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9긴급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119긴급신고 접수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고 한다)은 119긴급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및 출동대 편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 접수체계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해외에서의 119긴급신고) ① 소방청장은 해외에 있는 국민의 위급상황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 접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119긴급신고 접수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외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외에서의 119긴급신고 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119접수센터 등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119접수센터 및 119비상접수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①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 등은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가 해양사고 또는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유선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조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이관,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 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구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 대응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119영상 촬영 · 관리 등) ①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현장활동 및 대응에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등은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포함)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의 촬영, 연계, 보관, 공동이용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및 신고 이관·공유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의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정보통신 표준화심의회”(이하 “표준화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표준화 대상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심의

3.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지침의 개선 및 정착에 관한 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등은 재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 구축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 보안관리)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19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의 공유 또는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정보의 공유 및 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119긴급신고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이관을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이관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긴급신고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예산의 확보 · 지원 등)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중앙 및 시 · 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시 · 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119긴급신고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통계 · 정보 분석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통계 및 정보를 저장, 관리 및 분석하는 체계(이하 “통계 · 정보 분석체계”라 한다)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 정보 분석체계의 대상, 범위와 구축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9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